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특정금전신탁 계약서』 개정대비표

2018.1.1시행

현행	개정안	비고
<p>제1조(약관의 적용) ~ 제2조(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생략></p> <p>제3조(수탁자의 원천징수의무) ㉔ 수탁자는 제2조의 요건을 갖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 18(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에 따른 원천징수의무가 있다.</p> <p>㉕ 수탁자는 제1항의 원천징수 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수탁자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대상자 확인서」 및 「상품설명서」 등을 통하여 위탁자가 알 수 있도록 한다.</p> <p><신설></p>	<p>제1조(약관의 적용) ~ 2조(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현행과 동일></p> <p><삭제></p> <p>제3조(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에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로 한정한다)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200만원까지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p> <p>1. 직전 과세기간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소득이 있는 자(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p> <p>2. 직전 과세기간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자(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p> <p>②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가입한 거주자가 가입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자소득등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400만원까지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p> <p>1.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한다)</p> <p>2.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중</p>	<p>금투협 예시안에 따라 삭제</p> <p>금투협 예시안에 따라 신설</p>

<p>제4조(신탁금액) ① 이 신탁계약에서 최초로 신탁하는 최저 신탁금액은 금 1원으로 한다.</p> <p>② ~ ③ <생략></p> <p>제5조(신탁재산의 운용) ~ 제11조(신탁재산의 표시) <생략></p> <p>제12조(신탁보수) ① ~ ⑤ <생략></p> <p>⑥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계산된 보수를 제13조제1항의 신탁이익 지급일 에 신탁재산 중에서 수령하거나 위탁자에게 따로 요구할 수 있다.</p> <p>제13조(이익의 계산 및 지급) ① <생략></p> <p>1. 신탁계약 해지에 따라 신탁원본을 지급하는 날</p> <p>2. ~ 3. <생략></p> <p>② <생략></p> <p>제14조(세금 및 비용) ~ 제15조(부득이한 계약해지 사유) <생략></p> <p>제16조(중도해지) ① <생략></p> <p>② 위탁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전에 해당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을 해지(제15조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하거나 해당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부터 재산을 인출한 경우에는 위탁자가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추징받는다. ~ <생략></p> <p>1. <생략></p> <p>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4 제14항」이 정하는 청년</p> <p>나. ~ 다. <생략></p> <p>라. <신 설></p> <p>2.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u>합소득금액이 3천5백만원 이하인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정한다)</u></p> <p><u>3.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농어민(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5백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제외한다)</u></p> <p>제4조(신탁금액) ① 이 신탁계약에서 최초로 신탁하는 최저 신탁금액은 <u>금 1만원</u>으로 한다.</p> <p>② ~ ③ <현행과 동일></p> <p>제5조(신탁재산의 운용) ~ 제11조(신탁재산의 표시) <현행과 동일></p> <p>제12조(신탁보수) ① ~ ⑤ <현행과 동일></p> <p>⑥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계산된 보수를 제13조제1항에서 정한 신탁이익 지급일 <u>또는 중도인출에 따라 신탁원본을 지급하는 날</u>에 신탁재산 중에서 수령하거나 위탁자에게 따로 요구할 수 있다.</p> <p>제13조(이익의 계산 및 지급) ① <현행과 동일></p> <p>1. 신탁계약 해지 <u>또는 중도인출</u>에 따라 신탁원본을 지급하는 날</p> <p>2. ~ 3. <현행과 동일></p> <p>② <현행과 동일></p> <p>제14조(세금 및 비용) ~ 제15조(부득이한 계약해지 사유) <현행과 동일></p> <p>제16조(중도해지) ① <현행과 동일></p> <p>② 위탁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이전에 해당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을 해지(제15조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u>하는</u> 경우에는 위탁자가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추징받는다. ~<현행과 동일></p> <p>1. <현행과 동일></p> <p>가.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청년</p> <p>나. ~ 다. <현행과 동일></p> <p><u>라. 제3조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농어민</u></p> <p>2. <현행과 동일></p> <p><u>③ 위탁자가 계약기간의 만료일 이전에 납입원금(가입일로부터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납</u></p>	<p>초입금 1만원 변경 반영</p> <p>중도인출 반영</p> <p>중도인출 반영</p> <p>중도인출 반영</p> <p>중도인출 반영</p> <p>중도인출 반영</p> <p>조특법 조항 변경</p> <p>농어민 반영</p> <p>중도인출 반영</p>
---	---	---

<p><신 설></p> <p><신 설></p> <p>제17조(신탁계약의 종료) ① ~ ④ <생략> ⑤ ~ <생략>. 또한 신탁계약의 종료 이전에 신탁재산의 만기가 도래한 경우에는 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다.</p> <p>제18조(최종계산) ~ 제19조(담보제공) <생략></p> <p>제20조(신탁계약의 변경 등) ① ~ ④ <생략> ⑤ 수탁자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특정금전신탁계약서를 영업점에 갖추어 두거나 또는 게시하여 위탁자가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위탁자가 계약서를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제21조(사고신고 등) ~ 제24조(관계법규등 준수) <생략></p> <p>제25조(분쟁조정)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p> <p>제26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p> <p>제27조(계약의 적용) ① ~ ② <생략></p> <p>제28조 <생략></p>	<p><u>입원금"이라 한다)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로 보지 않으며, 수탁자는 인출일 기준 예상되는 소득세 상당액을 제외하고 위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u></p> <p><u>④ 위탁자가 계약기간의 만료일 이전에 납입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출일에 계좌의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아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u></p> <p><u>⑤ 위탁자가 신탁계약을 중도해지 하는 경우 수탁자는 중도해지한 때까지의 기간에 대한 신탁보수를 위탁자로부터 받는다.</u></p> <p>제17조(신탁계약의 종료) ① ~ ④ <현행과 동일> ⑤ ~ <현행과 동일>. 또한 신탁계약의 종료 이전에 신탁재산의 만기가 도래한 경우에도 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다.</p> <p>제18조(최종계산) ~ 제19조(담보제공) <현행과 동일></p> <p>제20조(신탁계약의 변경 등) ① ~ ④ <현행과 동일> ⑤ 수탁자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u>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특정금전 신탁 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를</u> 영업점에 갖추어 두거나 또는 게시하여 위탁자가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위탁자가 계약서를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제21조(사고신고 등) ~ 제24조(관계법규등 준수) <현행과 동일></p> <p>제25조(분쟁조정)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u>수탁자</u>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p> <p>제26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u>수탁자</u>와 <u>위탁자</u>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p> <p>제27조(관계법규 등 준용) ① ~ ② <현행과 동일></p> <p>제28조 <현행과 동일></p>	<p>중도인출 반영</p> <p>중도인출 반영</p> <p>문구정비</p> <p>용어정비</p> <p>용어정비</p> <p>용어정비</p> <p>용어정비</p>
---	---	---

<p>[별표1] 신탁재산 운용방법</p> <p>다음의 신탁재산 운용방법 ~ <생략> <신설></p> <p>- 정기에금을 운용방법으로 지정하는 경우 ~ <생략></p> <p>[별표2] 특정금전신탁 운용지시서 ~ <생략></p>	<p>[별표1] 신탁재산 운용방법</p> <p>다음의 신탁재산 운용방법 ~ <현행과 동일> ※ <u>자본시장법상 파생결합증권의 정의와 동일하지 않음에 유의</u></p> <p>- 정기에금을 운용방법으로 지정하는 경우 ~ <현행과 동일></p> <p>[별표2] 특정금전신탁 운용지시서 ~ <현행과 동일></p>	<p>금투협 예 시안 내용 반영</p>
---	--	-------------------------------